

Contents

1 대진법 제정 필요성

2 대진법안 추진 경과

3 대학도서관의 현주소

4 대진법안 제정 방향

5 마치면서

1. 대진법 제정 필요성

구 분	공공도서관	학교 및 대학도서관
목 적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강조	교육 및 연구기반 강조
봉사대상	특정 지역주민 봉사 중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지원 중시
지도감독부처	문화관광부 (문화정책적 시각)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적 시각)
관련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2. 대진법안 추진경과(1)

[입법절차 : 의원발의, 정부제출]



2. 대진법안 추진경과(2)

【제18대 국회】

접 수

- 2009.2.25. 정두언 의원 등 21인 발의
- 2009.2.2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 2009.3~2011.2. 정부 16개 부처에 의견조회
- 2011.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
- 2011.3.7.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본회의 심의

- 2012.5.29. 임기만료 폐기

2. 대진법안 추진경과(2)

동 제정 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도서관법의 대학도서관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록(2011.3.7)

2. 대진법안 추진경과(3)

대학도서관 평가는
내가!!!

도서관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의 수립·심의·
조정 사항이므로



대학도서관 평가는
내가!!!

교과부가 지도
감독하는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평가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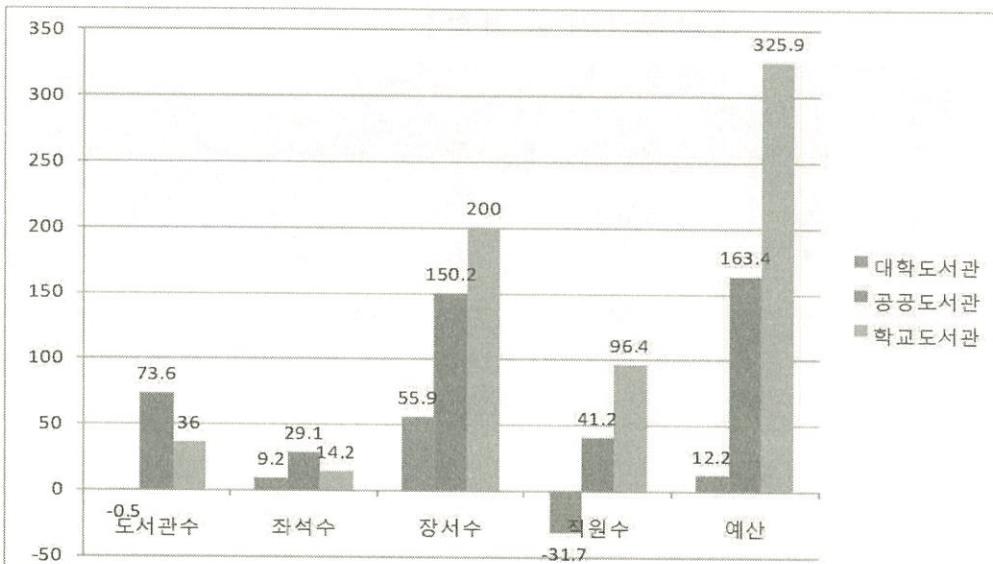


3. 대학도서관 현주소(1)

구 분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2009	2011	증가율	2009	2011	증가율	2009	2011	증가율
도서관수	436	434	- 0.5	437	759	73.6	8,426	11,461	36.0
총 책 수	410,653	448,740	9.2	247,185	319,323	29.1	544,106	621,489	14.2
장서수(천)	81,612	127,306	55.9	26,971	67,487	150.2	42,797	128,408	200.0
직원 수	3,866	2,637	- 31.7	4,968	7,018	41.2	2,432	4,777	96.4
예산(백만)	215,955	241,609	12.2	231,516	610,044	163.4	26,852	114,379	325.9

출처: 2011 한국도서관연감

3. 대학도서관 현주소(2)



4. 대진법안 제정 방향(1)

【대진법안 형식】

- ❖ 제정 법률안
- ❖ 의원발의 법률안
- ❖ 장, 절의 미 구분
- ❖ 본칙과 부칙
- ❖ 총칙 규정, 실체 규정

4. 대진법안 제정 방향(2)

【법률안 제정 현황】

구 분	제16대 국회 (2000~2004)	제17대 국회 (2004~2008)	제18대 국회 (2008.5~2011.9)
의원발의 법률안	1,192	6,387	11,012
정부제출 법률안	595	1,102	1,558

출처: 2011 법제실무(국회법제실)

4. 대진법안 제정 방향(3)

【19대 국회 추진실적】

- ❖ 2012.8.20. 법제연구사업단장 회의
- ❖ 2012.9.12. 교과부 업무협의
- ❖ 2012.9.14.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발표
- ❖ 2012.9.14. 김세연 의원실 업무협의
- ❖ 2012.11.14. 교과부 및 대도연 업무협의(수정안 마련)

【일반적인 법률안 구성체계】

1. 본칙	
가. 총칙규정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규정 (4) 기본원칙 (5) 효력순위 (6) 적용범위
나. 실체규정	(1) 행정행위(행정처분) (2) 제재적 행정처분 (3) 위임입법 (4) 결격사유 (5) 행정기관 (6) 부관
다. 보칙규정	(1) 보고·검사 (2) 청문절차 (3) 행정심판·행정소송 (4) 손실보상 (5) 권한의 위임·위탁 (6) 수수료
라. 벌칙규정	(1) 위반요건처벌범위 및 형량 (2) 양벌규정 (3) 행정질서벌(과태료)
2.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률의 폐지,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출처: 2011 법제실무(국회법제실)

구분	대학도서관진흥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총칙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대학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체 규정	제6조(설치)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제8조(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 제9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10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제11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3조(시설) 제14조(사서직원 등) 제15조(학술정보자원) 제16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제17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제18조(대학도서관 평가) 제19조(금전 등의 기부) 제20조(지도감독)	제5조(설치)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3조(시설·자료 등)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진법 자동폐기안 · 수정안 대비표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대학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시설을 말한다. 3. “학술정보자원”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중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된-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사서직원”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확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대학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시설을 말한다. 3. “학술정보자원”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중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된-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사서직원”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p>–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목적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시</p> <p>–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총칙규정-실체규정(학교도서관진흥법 참조)</p> <p>– 국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의규정으로 수정</p> <p>– 대학의 책무는 강행규정</p> <p>– 이 법이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p>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p>제3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총칙규정-실체규정(학교도서관진흥법 참조)</p> <p>– 국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의규정으로 수정</p> <p>– 대학의 책무는 강행규정</p> <p>– 이 법이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p>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7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12조에 따른 도시관정보정책위원회(아하림·시행이므로 별도 협의 불필요(교육과 시관위원회) 라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관정보정책위원회(아하림·시행이므로 별도 협의 불필요(교육과 시관위원회) 라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관련되는 바,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명시(문화체육관광부 검토의견)
②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안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각 대학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할 사항인 바, 자동폐기안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진흥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
1.대학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대학도서관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4.사서직원 등 도서관 직원의 확보·양성·교육 5.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대학간 자식정보격차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 8.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대학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대학도서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시설·자료의 확충 4.사서 등 도서관 직원의 양성·교육 5.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대학간 자식정보격차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 8.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제2항 2·3·4·7호의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사항이므로 자구수정하여 반영.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하여 대학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다.	제11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하여 대학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를 둘 수 있다.	- 대학도서관에 별도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의한 ‘대학평의원회’ 등 기존 기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규정으로 명시하여 대학이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법제조사관 검토의견)
②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사립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한 규제에 해당(법제처 검토의견)
1. 대학도서관운영계획 2. 학술정보자원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학술정보자원의 제작·폐기 4. 대학도서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5. 그 밖의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를 둘 수 있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를 둘 수 있다.	- 개별법에서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배치됨(행정안전부 검토의견)
② 전담부서에는 시서직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담부서에는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시서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함. - ‘시서’ 를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의하지 않고 제12조제2항에 부연 설명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5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① 대학도서관 진흥 및 대학도서관 간 상호 협력, 대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 등은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른 도서관관련 협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① 대학도서관 진흥 및 대학도서관 간 상호 협력, 대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 등은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른 도서관관련 협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등’ 과의 협력에 관한 조항 추가(문화체육관광부 검토의견 수용)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직원, 학습정보자원 등의 평가에 관한 기간,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12조에서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수립·심의·조정사항으로 규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문화체육관광부 검토의견)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동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동적으로 할 수 있다.	-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입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규제에 해당되므로 평가료 개선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등록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협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협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해당대학의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해당대학의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사서직원 등) ① 대학의 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 등을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사서직원 등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서 등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직원 등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의 시설, 직원, 자료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대학에 대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서직원’을 ‘사서’로 통일 - 제6조제1항이 사서배치 기준이므로 제6조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수정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2조[학술정보자원] ① 대학의 장은 대학 도서관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을 비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자원의 소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술정보자원] ① 대학의 장은 대학 도서관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을 비치어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활용을 위하여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학술정보자원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의 시설·직원·자료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대학에 대한 규제에 해당 (법제처 검토 의견 수용)
제18조[업무]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대학도서관의 업무"로 변경(학도서관진흥법 참조)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자원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직원의 연구 및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연구·학습지원서비스의 제공 3. 대학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원의 수집·관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4. 다른 대학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서비스 제공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자원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서비스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 4. 대학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 구축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서비스 제공	- 제1항제2호를 2.3호로 분리하여 상세하게 설명 - 수집·관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디지털 구축 및 운영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5.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행사 를 수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행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8조에 별도로 규정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 및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8조에 별도로 규정
제8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학술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술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구축된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학술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술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구축된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법제처 검토 의견 수용)

자동폐기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3조(업무) ③ 대학도서관은 제16항의 업무 이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방, 학술정보자원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와 협력 및 봉사) 대학도서관은 제7조의 업무 이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방, 학술정보자원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 및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두지 않고 제8조(지역사회와 협력 및 봉사)에서 규정
제16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9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시설·학술정보자원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자료'를 제18조와 같이 '학술정보자원'으로 통일
제17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0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안(2012.12.현재)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확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대학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시설을 말한다.
 3. "학술정보자원"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중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자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서비스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
4. 대학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 구축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조(지역사회 협력 및 통사) 대학도서관은 제7조의 업무 이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방, 학술정보자원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 및 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대학도서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시설·자료의 확충
4. 사서 등 도서관 직원의 양성·교육
5. 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간 지식정보격자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
8.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전담부서에는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서 등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등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술정보자원)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학술정보자원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학술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술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구축된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① 대학도서관 진흥 및 대학도서관 간 상호 협력, 대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 등은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협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직원, 학술정보자원 등의 평가에 관한 기간,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협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시설·학술정보자원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마치면서

- ❖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은 타 관종에 비해 발전속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남.
- ❖ 배치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규제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평가의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발전 유도해야!
- ❖ 관계부처에서는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학도서관 발전을 생각해야!
- ❖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여 국가핵심 기반시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